

-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 지원사업 -
민간위탁 제안요청서

2025. 6.

경 기 도
(사회적경제육성과)

I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규격 및 제출부수

- 규 격 : A4(210×297mm) 백상지, 좌철 무선 제본, 양면인쇄
- 분 량 : 100페이지 이내
- 제출부수

제출자료	제출부수
정량적 평가자료, 가점 자료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정성적 평가자료(제안서)	.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사업제안서 발표(설명) 자료(PPT)	. 원본 파일 1개 + 원본 파일 출력본 1부 . 사본 파일 1개 + 사본 파일 출력본 12부
외부저장장치(USB)	. 1개(제출하는 모든 자료 포함)

- ※ 원본(단체·기관 식별정보 기재), 사본(단체·기관 식별정보 삭제)
- ※ 제출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참조

2. 제안서 작성요령

- 사업제안서[서식 18, 19]
 - 작 성 : 한글 파일(확장자 hwp) ※ PDF로 변환 후 한글 파일 같이 제출
 - A4 규격 : 상하 여백 12.7mm, 좌우 여백 18mm, 머리말·꼬리말 12.7mm
 - 쪽 번 호 : 하단 중앙 ‘-1-’, ‘-2-’, ‘-3-’ 으로 표기
 - 칼라사용 : 칼라사용에 대한 제약 없음
 - 제안서는 기본적으로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 ①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서술
 - ② 제안서 표지는 [서식 제18호] 양식으로 작성
 - ③ 제안서는 [서식 제19호]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기관의 필요에 따라 창의적으로 작성 가능. 단, 본 제안요청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 ④ 제안서의 내용은 현실적이며 실현가능한 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 계획, 세부사업계획 등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인용 자료나 데이터는 출처 명시
 - ⑤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⑥ 비율 산정시에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⑦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 절사
- ⑧ 제안서와 첨부자료(각종 증빙서류)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첨부자료에는 인식표(견출지 등) 등을 붙여 해당 증빙자료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조치
- ⑨ 제안서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제안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사업제안서 발표(설명) 자료(PPT)

- ①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수행계획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회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제안 내용을 발표(설명)
- ② 발표자료(설명)는 ‘파워포인트(PPT)’로 작성, PPT 파일(PDF 변환 파일 포함) 및 인쇄물 제출
- 제출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자료와 함께 제출
- 파일 : 별도제출 USB 1개, 담당자 이메일(popoyoung@gg.go.kr)로 제출
- 분량 : 파워포인트(PPT) 기준 20페이지 내외
- 인쇄물 : 13부(원본 1부 + 사본 12부)
- ③ 발표(설명)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신청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직원으로 본 사업의 과업 참여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신분증, 명함 등 지참 요망
- 발표(설명) 미참석 시 위탁 사업 낙찰자 포기로 간주함
- ④ 발표(설명) 시간은 제안서별 30분(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하되, 신청기관 수 및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⑤ 발표순서는 제안서의 접수 순서대로 함
- ⑥ 정성적 평가를 위한 제출 서류 (사업수행계획서, PPT 등) 관련 : 제안 기관명은 제출 부수 13부 중 원본 1부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1부를 제외한 제안서 사본 12부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하지는 안됨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발주부서(사회적경제육성과)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발주부서는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발주부서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적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정성적 평가서류의 내용과 참가신청서류 및 정량적 평가서류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는 참가신청서류 및 정량적 평가서류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기관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자의 책임임

4.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 내용과 제안서 작성 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여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을 최소화하여야 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입증자료는 제안서 뒷부분에 첨부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대체·추가할 수 없음
- 계약 성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기관은 계약해지 및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 제안자는 발주부서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각종 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기관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 ※ 복수 제출 금지
-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부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관련 규정에 따름

II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표

※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사업

1. 총괄

구분	평가분야 (배점)	평가항목	배점	비고
총 계			100 (5)	
소 계			20	
정량적 평가	사업수행 실적	· 햇빛발전 및 통합돌봄 관련 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단일 사업금액 5천만원 이상)	5	사업 부서
		· 햇빛발전 및 통합돌봄 관련 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단일 사업금액 5천만원 이상)	5	
	사업수행 인력	· 전문인력 사업참여 인원 수	5	
	재정상태 건실도	·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신인도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여부	3	
소 계			80	
정성적 평가	사업의 이해도	· 사업취지 및 목적, 사업대상 등 과업 전체 이해도 (햇빛발전 및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 등)	20	수탁 기관 선정 심의 위원회
	운영계획	· (햇빛발전) 햇빛발전소 설치 및 수익 실현방안 · (통합돌봄) 다양한 맞춤형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 및 사업 적용방안 · (연계성) 두 핵심사업 유기적 연계 및 시너지 창출 전략	25	
	인력구성	·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인력 배치의 적정성	10	
	성과관리	· 세부 사업별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 체계적인 사후관리 계획	10	
	예산편성	· 예산 배분의 효율성 및 합리성 · 지출 및 정산 계획	10	
	안전보건관리 및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 사업 참여 인원 안전사고, 질병 관리계획 수립 적정성 · 안전보건 관리체계 수립 교육 등 관리방안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약속서 제출 여부	5	
	가점	· 컨소시엄 및 연대조직 참여 범인으로 2개 대표분야(태양광발전, 통합돌봄)에서 각각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모두 참여(해당법인은 위 정량평가 기준중 “사업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배점이 중위 수준 이상 충족)	5	

※ 심의결과 70점 미만이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수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정량적 평가가점 배점 세부기준

※ 가~ 마 항목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점수 인정 불가

※ 컨소시엄 및 연대조직 내 기관실적 등 합산가능

가. 사업수행실적(10점) : <서식 5,6>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햇빛발전 및 통합돌봄 사업 수행실적 건수 (5점)	· 평가방법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햇빛발전 및 통합돌봄 관련 사업(발전소 건설, 돌봄(주거,먹거리,동행,의료 등) 등 수행실적 건수(단일 사업금액 5천만원 이상)				
	구 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점 수	5	4	3	2	1
햇빛발전 및 통합돌봄 사업 수행실적 금액 (5점)	· 평가방법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햇빛발전 및 통합돌봄 관련 사업(발전소 건설, 돌봄(주거,먹거리,동행,의료 등) 등 수행실적 금액(단일 사업금액 5천만원 이상)				
	구 분	10억 이상	8억 이상 10억 미만	6억 이상 8억 미만	4억 이상 6억 미만
점 수	5	4	3	2	1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사업을 대상으로 햇빛발전 및 통합돌봄 관련 사업(발전소 건설, 돌봄(주거,먹거리,동행 등)을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완료된 사업만 해당 / 단일 사업금액 5천만원 이상, 부가가치세 제외)
- 실적증명서 미제출 또는 기재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
- 증빙서류 : 실적당 1부씩 제출 <서식 5,6>

- (공공부문)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 (민간부문)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준공확인서 사본 등

나. 사업수행인력(5점) : <서식 7>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전문인력 사업참여 인원 수 (5점)	• 평가방법 :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근무인력 중 본 과업 투입인력만 인정 구 분 6명 이상 5명 4명 3명 2명 이하 점 수 5 4 3 2 1					
	①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근무인력 중 본 과업 투입인력만 인정되며, 햇빛발전 및 통합돌봄 관련 사업의 기획·운영·관리 등 전담경력 2년 이상자만 해당 ※ 사업 운영 주체가 아닌, 일회성 특강, 단순 강의 및 자문 등은 경력 및 투입인력 제외					
	② 공고일 당일 이후 신규채용자는 평가 제외, 증빙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 ③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발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근무내용(담당업무 등) 필수 기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이외의 4대 보험에 대한 가입증명서(이력내역서)로 대체 가능					

- ①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근무인력 중 본 과업 투입인력만 인정되며,
햇빛발전 및 통합돌봄 관련 사업의 기획·운영·관리 등 전담경력 2년 이상자만 해당
※ 사업 운영 주체가 아닌, 일회성 특강, 단순 강의 및 자문 등은 경력 및 투입인력 제외
- ② 공고일 당일 이후 신규채용자는 평가 제외, 증빙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
- ③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발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근무내용(담당업무 등) 필수 기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이외의 4대 보험에 대한 가입증명서(이력내역서)로 대체 가능

라. 신인도(3점) : <서식 16>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여부 (3점)	구 분	없음	있음
	점 수	3	0

- 평가방법
- ① 법인, 단체 등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기재

마. 가점(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2개 대표분야 사업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배점이 모두 중위수준 이상 충족 (5점)	구 분	해당	미해당
	점 수	5	0

- 평가방법
- ① 정량적 평가 가점배점 세부기준 중 '사업수행실적 및 재정상태건실도' 배점 중위 수준 확인

다. 재정상태 건실도(2점) : <서식 15>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경영상태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 BBBO	A1 ~ A30	AAA ~ BBBO	2
	BBB-, BB+, BBO, BB-	A3-, B+, B0	BBB-, BB+, BBO, BB-	1.5
	B+, B0, B-	B-	B+, B0, B-	1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5	

- 평가방법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함
- ②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 ③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
- ④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3. 정성적 평가 평가기준

- 정성적 평가항목의 평가는 별도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의 주관적 평가에 의함
- 평가항목별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배점계수를 합산
- 위원별로 합산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그 평균값을 최종 점수로 산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지표별 평가기준

구분		탁월 ※최고점	우수	보통	미흡	(자료 미제출)
배 점 계 수	5점 기준	5	4	3	1~2	0
	10점 기준	9~10	7~8	5~6	1~4	0
	20점 기준	16~20	11~15	6~10	1~5	0
	25점 기준	20~25	14~20	7~13	1~6	0

□ 정성적 평가지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지표 구분	평가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80	
정성적 평가 분야 (80점)	사업의 이해도	· 사업취지 및 목적, 사업대상 등 과업 전체 이해도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사업의 이해 등)	20	서식19 I 항목
	운영계획	· (태양광발전) 햇빛발전 소득의 구체적 실현방안 · (통합돌봄) 다양한 돌봄분야에 대한 통합적 이해 · (연계성) 두 분야의 유기적 연계 및 모델 구조화 창출 전략	25	서식19 II 항목
	인력구성	·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인력 배치의 적정성	10	서식19 III 항목
	성과관리	·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 체계적인 사후관리 계획	10	서식19 IV 항목
	예산편성	· 예산 배분의 효율성 및 합리성 · 지출 및 정산 계획	10	서식19 V 항목
	안전보건 관리 및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 사업 참여 인원 안전사고, 질병 관리계획 수립 적정성 · 안전보건 관리체계 수립 교육 등 관리방안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제출 여부	5	서식19 VI 항목

III 제출서류 및 서식안내

구분	제출항목	서식번호	제출부수
참가신청서류 *정량적 평가용	정량적 평가 자료 표지	1	원본 1부 + 사본 1부
	참가 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법정 서식 활용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단체) 정관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기관(단체) 연혁 및 일반현황	4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수행실적	5	
	관련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6	
	제안사 조직 및 참여 인력 현황	7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8	
	서약서	9	
	일괄 및 일부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	10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2	
	안전보건관리 확약서	13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직원용	1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5		
신인도(행정처분 내용) 확인서	16		
정량적 평가·가점분야 자기진단서	17		
정성적 평가 서류	정성적 평가 자료 표지	18	원본 1부 + 사본 12부
	사업제안서(계획서)	19	
	사업제안서 발표 자료(PPT)	20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경기도의 민간위탁사무 관련 감사지도점검성과평가 결과 ※ 해당시 제출	21	

※ 제출하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USB 1개 별도 제출
 ※ 모든 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후 인감으로 날인

<서식 제1호> 정량적 평가 자료 표지

접수번호	
------	--

-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사업 -

사업제안서

【정량적 평가용】

2026. . .

기관명	대표자
	(인)

※ "기관명, 대표자"는 원본 1부에만 기재 후, 인감 날인 함 (사본 1부는 기재하지 않고 빈칸 제출)
 ※ 접수번호 란은 공란으로 둠

기관(단체) 연혁 및 일반현황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	(전자우편)																																
	(FAX)	(홈페이지)																																
설립(등록)일자			허가(등록)기관																															
사업자번호			총회원수	명																														
			(해당시)																															
설립목적	o																																	
국내/해외 지부현황	o 설립일자 :		o 지부장(성명) :																															
	o 소재지 :		o 인력현황 : 명(상근, 비상근)																															
주요연혁	※ 예시(안) o ' 81.11. 8 ○○○ 창립 o ' 88. 6.15 ○○○○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o o																																	
인력현황 (단위: 명)	※ 예시(안)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h rowspan="2">계</th> <th colspan="2">임원</th> <th colspan="2">직원</th> <th rowspan="2">기타</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상임</th> <th>비상임</th> <th>정규직</th> <th>비정규직</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계	임원		직원		기타	비고	상임	비상임	정규직	비정규직																	
계	임원		직원		기타	비고																												
	상임	비상임	정규직	비정규직																														
예산현황 (단위: 천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h>연도</th> <th>계</th> <th>회비수입</th> <th>기부금 및 모금활동</th> <th>정부보조</th> <th>기타</th> <th>비고</th> </tr> <tr> <td>202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연도	계	회비수입	기부금 및 모금활동	정부보조	기타	비고	2025							2024							2023						
연도	계	회비수입	기부금 및 모금활동	정부보조	기타	비고																												
2025																																		
2024																																		
2023																																		
자본금	자산	고정자산	천원	부채	천원																													
		유동자산	천원																															
주요사업	o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 별지 작성 가능																																	
	o																																	
	o																																	
법인·단체 등 운영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 (최근5년 이내)	o																																	
	o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수행실적

가. 주요 사업 내용

○ 제안사명 :

연번	①사업명	사업기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주요내용 및 실적	③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④ 증빙 번호	비고
계								

- 주) 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실적만 해당 건별로 정확하게 기재함
 ※ 관련사업 인정범위 :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참고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함
 3.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함
 (분담율표시)
 4. 실적의 증명 : [서식 6]「사업실적증명서」(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함.
 ※ 증빙자료로 협약서, 계약서 사본 제출 시 사업이 종료된 실적의 경우 위탁기관에서 통보한 정산결과
 자료 등 사업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출해야 인정가능함.
 ※ 증빙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나. 계약건별 내역

계 약 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완료일	202 . . ~ 202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서식 제6호> 관련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태양광 및 통합돌봄 관련 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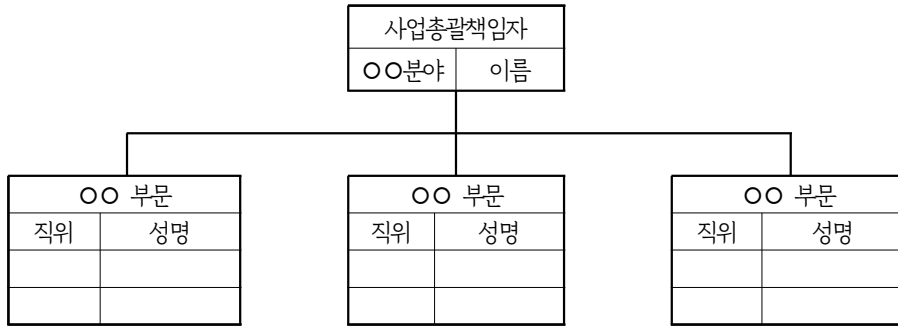
신 청 인	업 체 명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 사업 실적증명용		제출처	경기도청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등)					
사업수행 실적내용 (최근3년간)	사 업 명					
	사업개요					
	계 약 번 호	계 약 일 자	위탁(사업)기간	규 모	사업실적	
				천원	비율(%)	실적(천원)
					%	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전화번호 :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직	성명	(인)

※ 유의사항

○ 인정범위 :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참고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사업수행조직도



2. 사업수행 전문인력 현황

성명	생년월일	본 사업 참여임무	현장근무경력	전공 또는 보유자격증	상시/비상시 고용

- 1.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근무인력 중 본 과업 투입인력만 인정
- 2. 인정범위 :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참고
- 해당분야 업무경력은 건강보험 등으로 증빙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인정
 - 경력증빙방법 : ①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발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근무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② 건강보험 이외의 4대 보험에 대한 가입증명서(이력 내역서)로 대체 가능

위임장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체명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	

상기인을 당 기관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 수탁기관 선정 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
기관명 :
주소 :
대표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재직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
기관명 :
주소 :
대표자 : (인)

-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 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공개모집 신청에 있어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3.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경기도와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경기도지사 귀하

일괄 및 일부 (재)하도급 금지 협약서

기관명 :

주 소 :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 사업자 선정 입찰 참가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합니다.

1. 동 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타인과의 계약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취한 후, 사업에 대해 일괄 및 일부 (재)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 이후 타 업체와 일괄 및 일부 (재)하도급 한 사실이 경기도에 적발된 경우, 동 사업에 따른 계약이 해지되어도 민사소송 등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일괄 및 일부 (재)하도급 적발에 따른 계약해지시, 경기도로부터 기 지급받은 민간위탁비 일체를 반납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경기도지사 귀하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협약서

“〇〇〇〇”는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 사무를 수탁 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〇〇〇〇”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경기도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신고자·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〇〇〇〇”는 경기도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기관명 :

대표자 :

위 기관은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 사업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또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1. 입찰자격의 유지 및 특정업체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등으로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입찰, 계약체결 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전·후 과정에서 계약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입찰, 계약체결 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전·후 과정에서 계약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낙찰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보안서약서 (직원용)

- 주 소 :
- 상 호 (소 속) :
- 직 위 (급) :
- 성 명 :

본인은 소속 단체(법인)()에서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함과 관련하여 계약조건 및 과업 지시서의 보안 사항과 제반 보안대책을 어김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특히 각종 자료 및 프로그램 관련 사항 일체를 관계자 이외에는 열람, 대출하거나 무단으로 복제복사하여 유출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기간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제반 보안 사항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아니하는 등 위 사항들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위 서약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부과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제재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서약자 성명 : ①

경기도지사 귀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공인된 신용정보회사에서 발급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자료를 갈음하여
첨부

신인도(행정처분 내용) 확인서

행정처분 종류	처분 사유 (관련 법령)	처분일시	처분 기간	비 고

-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주 2) 최근 2년 법인, 단체 등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기재
- (주 3)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신청인이 모든 책임을 짐.

2026년 월 일

신청인 :

㉠

경기도지사 귀하

법인명 (단체명)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수행 실적 (10점)	최근 3년간 햇빛발전 및 통합돌봄 관련 사업 수행실적 건수 (5점)	5건 이상 (5점)	4건 (4점)	3건 (3점)	2건 (2점)	1건이하 (1점)
	최근 3년간 햇빛발전 및 통합돌봄 사업 수행실적 금액 (5점)	10억 이상 (5점)	8억 이상 10억 미만 (4점)	6억 이상 8억 미만 (3점)	4억 이상 6억 미만 (2점)	4억 미만 (1점)
사업수행 인력 (5점)	전문인력 사업 참여인원 수 (5점)	6명 이상 (5점)	5명 (4점)	4명 (3점)	3명 (2점)	2명 이하 (1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신용평가등급	예)BB-				점
신인도 (2점)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여부	예)없음				점
가점 (2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도	예)해당있음				점
총계						점

- 주) 1. 경영상태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중 신용평가등급에 해당하는 배점을 기재한다.
2. 사업수행인력은 본 과업투입 인력 중 전문인력 보유현황의 해당 배점을 기재한다.

접수번호	
------	--

–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사업 –

사업제안서

【 정성적 평가용 】

2026. . .

기관명	대표자
	(인)

※ “기관명, 대표자”는 원본 1부에만 기재 후, 인감 날인 함 (사본 12부는 기재하지 않고 빈칸 제출)

※ 접수번호 란은 공란으로 둬

- 목 차 -

I. 제안 개요	00
II. 사업 추진계획	00
III. 조직인력 및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보호 조건	00
IV. 성과관리 및 사후지원	00
V. 예산운용 계획	00
VI. 안전보건관리 계획	00
VII. 0000000	00
VIII. 0000000	00
IX. 0000000	00

※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 사업 요약서

기관명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사업비	총 계	국비	도비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수행인력	총 00명(전담인력 : 00명, 단시간근로자 00명)			
총 사업기간				
사업내용 요약				
사업개요	- 사업 추진 필요성, 추진방향 등			
추진계획	-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일정 제시 등			
성과관리	- 사업 성과 도출을 위한 독창적인 자체지표 제시 및 달성계획 등			

※ 요약서는 A4 4쪽 이내로 작성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사업 사업제안서

○ 작성대상기간 : 계약체결시 ~ ' 26. 12. 31.

- 서식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며, 추가항목 또는 보충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작성 (추가 항목 포함 100페이지 내외로 작성 요망)
- 모든 항목은 구체적이며 명료하게 기술하여야 함

I. 제안 개요

사업 목적 및 배경

○

추진방향 및 핵심전략

○

기대효과

○

II. 사업 추진계획

햇빛(태양광)발전 운영계획

○ 태양광 발전을 통한 소득창출의 구체적 실현방안(공고문상 수탁사무 세부내용 참고)

-

○

-

○

통합돌봄(주거,먹거리,아동 등) 운영계획

○ 통합돌봄 분야 발굴 등 사업 운영방안(공고문상 수탁사무 세부내용 참고)

-

○

-

○

햇빛발전을 기반으로 한 사업 간 통합 운영 및 연계방안 등

○

-

□ 추진일정

○ 분기별 또는 월별 로드맵

-

III. 조직인력 및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 보호

□ 조직도 및 업무분장

○

○

□ 인력 채용 및 관리방안

○ 회계, 사업운영 등

○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계획

○ 근로관계법령 준수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계획 등

IV. 성과관리 및 사후지원

□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및 달성방안

○ 성과지표 설정-지표산출식, 측정방법 포함,

○ 성과지표 달성계획 - 예시:성과지표에 따른 평가결과 반영 등

-

□ 참여자 사후관리

○ DB 관리 등

-

□ 사업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

V. 예산운용계획 (※ 참고 1 예산운용 계획서 참조 작성)

VI. 안전·보건관리 계획 (※ 참고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참조 작성)

참고 1 예산운용 계획서(2026년 기준)

□ 민간위탁비 산출내역서(2026)

- 사업명 :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 사업
- 예산액 : 1,0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국비 50%, 도비 50%
- 위탁기간 : '2x. 1. 1. ~ '2x. 12. 31.

(단위:천원)

예산구분	세부항목	산출내역	금액
총 계			
인건비 (00%)	소 계		
	연 봉		
	수 당		
	법정충당금		
운영비 (00%)	소 계		
	사무관리비		
	안전관리비		
	회계감사수수료		
	위탁수수료		
사업비 (00%)	소 계		

※ 산출내역은 종류, 단가, 수량,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

예) 강사료 100천원x2명x3회 = 600천원(순서대로 기재)

참고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 사업장 개요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연락처)							
직원 수	총 0명(상시근로자 0명)						
안전보건 전담부서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직원 수(전담)		0명			
안전보건담당자(대표)	해당없음		연락처		031-000-0000		
최근 3년간 산재현황 (사망자 수/ 재해자 수)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사고	0/0	0/0	0/0			
	질병	0/0	0/0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구분	주요 추진내용	목표	비고
직원	정기 안전보건교육	3시간/분기	
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16시간/연간	
이수	채용시 안전보건 교육	8시간/연간	

안전보건경영방침

OOOO는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최고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 활동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다.
2. 최고경영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게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한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OO) 대표자 성명 (서명)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및 역할

총장/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소계획 추진 총괄 •방침, 목표 수립, 공표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교육 참석

관리감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현장 점검지원 • 담당 현장 교육지원 • 담당 현장 점검사항 개선여부 확인 • 산업재해 관리 등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현장 점검지원

직책	성명	담당업무
원장	000	1. 전사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승인 2. 전사 안전보건방침 설정 3. 전사 안전보건목표 등 체계 업무 전반에 대한 승인
관리감독자	000	1. 담당 현장 점검지원 2. 담당 현장 교육지원 3. 담당 현장 점검사항 개선여부 확인 등 4. 산업재해 관리 등
근로자		1. 담당 현장 점검 지원

□ 안전보건예산 및 시설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6년
안전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인력 예시] 2인]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대한 기준 마련 등

3 안전보건활동계획

안전보건활동 목표/추진계획	결 재	작성	검 토	승 인

추진계획	추진일정 (분기)	성과지표	담당부서	예산	달성율	실적 /부진사유
				(천원)	(%)	
정기 위험성평가	계획	○				
	실적					
합동 안전점검	계획		○			
	실적					
시정조치	계획	○	○	○	○	100% 개선
	실적					
정기 안전보건교육	계획	○	○	○	○	3시간/분기 (3명)
	실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		16시간/년간 (1명)
	실적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계획	○	○	○	○	8시간/년간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		○	1회/반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실적					

□ 유해위험요인 관리

○ 사용기계·기구·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순번	기계기구·설비	용량	작업장소	수량	검사대상 (검사실시)	방호장치	점검주기	발생가능재해 형태	관리계획
1	지게차	5t				법정방호장치		부딪힘	
2									
3									

○ 위험성 평가

※ 작업과 관련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 제출(필수)

□ 안전보건 점검 및 이행확인

구분	주요 추진내용	목표	비고
안전	안전보건 합동점검	1회(연 1회)	
보건	현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매일	
점검	각종 점검결과 개선여부 확인	수시	

□ 안전보건교육

NO	교육과정	일정												대상 (명)	방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정기교육			○			○			○			○	3명	
2	채용 시 교육													발생시	
3	비상교육 및 훈련				○								○	3명	
4	작업내용변경 교육													발생시	
5	관리감독자 교육		○											1명	

□ 비상조치 관리계획

○ 비상대응체계 및 절차, 신호체계 등

<서식 제20호> 사업제안서 발표 자료(PPT)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사업

사업제안서

(발표용 PPT 출력물)

- * PPT 발표 자료는 전자파일 이메일 제출 시 함께 파일 형태로 제출
- * PPT 내용은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정성적 평가를 위한 평가 요소 “사업의 이해도, 조직 및 인력 운영, 사업 수행능력, 사업계획, 사업 평가 및 환류계획, 성과확산 방안, 예산편성, 안전보건관리 계획 등”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발표용 PPT 출력물은 한쪽 당 “1컷” 횡으로 인쇄

